

 금융위원회	<h1>보도자료</h1>			 대한민국 대전환 <b>한국판뉴딜</b>   내 삶을 바꾸는 <b>규제혁신</b>
	<b>보도</b>	4.13.(화) 10:00	배포	

<b>책임자</b>	금융위 산업금융과장 김성조(02-2100-2860)	<b>담당자</b>	배수찬 사무관 (02-2100-2863)
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

## 제 목 :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
- '21.4.13(화) 국무회의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개정안 의결**  
 - 구상권 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과세당국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조항 신설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.

- '21.4.13일(화) 국무회의에서 「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이 의결되었습니다.
- 개정안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과세당국으로부터 확보하여 구상권 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함입니다.
  - ①** 개정안은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과세정보 요청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    - ※ 현재 세무관서와 지자체가 보유한 과세정보의 구체적인 요청 근거가 없어서 과세정보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
  - ②** 또한, 납세자의 인적사항, 사용목적, 요청하는 정보 및 범위의 사항을 구체적인 문서로써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    -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「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은 4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.

 <small>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</small>	<small>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</small> <a href="http://www.fsc.go.kr">http://www.fsc.go.kr</a>	<b>금융위원회 대변인</b> prfsc@korea.kr	 <small>입법관리청 콜센터</small>
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**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**